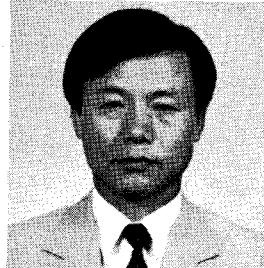


# 영업비밀 중심시대에 기업의 대응(1)



黃義昌  
(특허청 상표심사2과장)

## 차례

- I. 머리말
- II. 영업비밀의 관리
  - 1. 적극적 관리
  - 2. 소극적 관리
- III.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1. 화해 등 협상에 의한 구제
  - 2. 법적 구제
- IV.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
  - 1. 미국
  - 2. 독일
  - 3. 일본
  - 4. 영국
  - 5. 스위스
  - 6. 프랑스
- V. 맷는말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 I. 머리말

그동안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영업비밀이 80년대 중반 미국의 슈퍼 301조의 발동과 86년 7월 21일 한·미 지적재산에 관한 양해각서의 교환, 92년 12월 15일 영업비밀 보호규정의 제정 시행(부정경쟁방지법내에 신설), 93년 12월 15일 근 7년을 끌어오던 우루파이 라운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의 협상타결 등을 계기로 우리 산업체에 어렵잖이 나마 알려지게 되면서 그 중요성도 차츰 인식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선진산업국들은 이미 80년대에 들어 오면서부터 지적재산인 영업비밀을 닦아 올 산업체전의 무기로 삼으로려는 노력을 하여 왔고 어느덧 경쟁상대국은 물론 후발개도국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느낌이며 앞으로 그 위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 예로서 94년 1월 5일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 의한 「일진」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금지판결 등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최근 전자·통신·제약 등 첨단산업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매수에 의한 부정 스카우트, 전자통신장비의 이용, 거래업체 위장, 고객 가장, 위장 취업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막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와 많은 지적 창작 노력, 오랜시간을 들여 창출한 영업비밀을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도용하거나 무단사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92년 12월 12일 스피카 전문제조업체인 삼미기업의 자문이사이 호주인 「릭보튼」씨가 시장정보를 경쟁사인 미국 「오우라사」에 유출시킨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중심시대를 맞아 그동안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그리 익숙하지 못한 우리 산업체는 다소 당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업비밀의 관리 및 분쟁해결방법 등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업계는 영업비밀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금번 타결된 우루파이 라운드의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 규범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함은 물론 주요 경쟁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사법제도 및 관행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대응에 필수적이다. 그 연후에 업계는 각 기업문화에 알맞는 영업비밀의 관리모형과 관리방법을 개발하고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해 나아가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본지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법적 개념과 그 내용을 설명한바 있기 때문에 본란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관리노력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일단 침해를 받은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그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으로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소개하는 순서로 끝을 맺고자 한다.

## II. 영업비밀의 관리

영업비밀의 보호는 비밀정보를 생산, 이용, 관리하고 있는 자와 전혀 이와는 관련이 없는 자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적관리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 및 장소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 적극적 관리

#### 가. 인적 관리

영업비밀은 내부인에 의한 누설과 외부인에 의한 탐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대상이 되는 사람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위치에 있는 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위치에 있는 자 모두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

#### (1) 기업 내부인 등에 의한 누설 등의 방지

영업비밀은 주로 기업 내부인에 의하여 누설됨으로 영업비밀과 관련한 종업원과 거래관계자 등에 의한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종업원이

라 하면 취업규칙에 의해 기업과 사원계약 관계에 있는 정규사원(임원 또는 직원)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사원, 계약사원, 촉탁사원, 출장사원, 파견사원 기타 청부계약 등에 의한 특수근로자까지를 포함하며 거래관계자라 하면 자회사, 하도급 회사 등의 수탁회사나 제휴회사는 물론 거래선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기업 외부인 등에 의한 탐지 등의 방지  
영업비밀은 기업내부인 등에 의한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인 등에 의해서도 탐지됨으로 공장전학, 공장시찰, 기타 방문객과 산업스파이 등 제3자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기업내부인과 외부인과의 공동유출방지  
최근 기업내부인의 단독 누설보다 외부인과의 공모에 의한 공동유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증가 추세는 정보를 사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팔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영업비밀의 침해사건은 기술개발이나 기술혁신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큰 자체기술개발을 기피하고 유리한 도용이나 모방쪽을 택하는 데에서 기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장 분량의 정보자료를 단 한 장의 컴퓨터 디스크에 담고 있어 언제든지 손쉽게 훔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이사급 이상의 임원인 관리층 내지는 경영층에 의한 유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즉, 이사급 이상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에 비해 그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들에 의한 영업비밀 누출 등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기 때문에 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는 직원에 비해 의외로 영업비밀의 유출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한 관리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① 채용전 면접을 통해 인성·직업관·정직·신의·성실과 같은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업 문화에 적합한 인재의 발굴·채용에 참고한다.

② 채용시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특별히 작성한다. 채용시의 영업비밀 유지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취업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안에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특별계약조항을 직접 두거나 취업규칙에서 영업비밀관리규정에 위임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규약적 형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취업규칙이나 이에 의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종업원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종업원과 영업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유지계약에는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사용자는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③ 채용후 현직종업원의 고용기간 중 겹업금지의무를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영업비밀관리규정에 정하여 운용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재직중 경쟁회사나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거나 경쟁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으면 않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다. 그러나 아무리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관리규정 등에 의한 영업비밀유지계약 등을 철저히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무관리 즉, 회사의 만족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명실상부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 등 사내 윤리의 확립과 종업원의 도덕심 함양 사내 불만, 불안요소의 해소를 위한 공정한 인사와 충분한 보수의 지급,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 기타 긍지와 성취욕 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람과 풍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기앙양의 노무관리가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인적관리를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이다. 즉, 신입사원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영업비밀관리규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고용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도록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퇴직시에는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명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의무를 취업규칙이나 취업 규칙에 근거한 영업비밀관리규정에 정하여 이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다. 이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유효한 대가에 의해야 한다. 제한이 부과되는 기간, 지역은 한정하되 합리적이어야 하고 제한을 가하는 직종의 범위는 세분화하여 한정하며 사항적인 제한으로서는 근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이라고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은 양당사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공공의 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유효한 대가라 함은 경업금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조치에 의해서 받은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경업금지기간 동안의 비밀

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예를 들면 명예수당 또는 기밀수당 등의 지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장소라 함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활동 구역내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퇴직자와의 경업금지계약의 체결이 퇴직종업원의 거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이다. 이때 사용자 측은 먼저 퇴직종업원의 거부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등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끝내 퇴직종업원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날인 거부라고 쓰고 거부일자, 거부사유 등을 명시한 동 계약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만약 수취인 거부로 세번 이상 회송되어 올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고 혹 날 그 퇴직 종업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공개되어 사업상의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한 이와 같은 계약서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래관계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거래전에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혹은 각서 등을 징수하고

② 거래시에는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특별약정을 해야 한다. 즉, 계약기간 동안은 전속계약으로 경업사업금지를 의무화한다.

③ 거래후 일정기간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권 내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거래관계 자등이라함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방계회사, 하도급 관계에 있는 회사, 제휴회사 기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고문, 자문 기타 조력자와 퇴직 종업원을 말한다.

세째, 제3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방문전에 공식, 비공식 방문을 불문하고

반드시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할 장소, 방문 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점검한다.

② 방문시 방문전에 제출한 명단과 대조하고 방문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승락없이는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각서를 징구한다. 또한 방문시 카메라, 카세트 테잎 등 휴대품의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금속탐지기에 의한 몸 수색을 한다. 이상과 같은 공식 또는 비공식 방문객 등에 대한 관리 이 외에 산업스파이 등 영업비밀 탐지를 목적으로 접근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공장 등 주요시설에 카드 시스템에 의한 점검은 물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비디오 장치의 설치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탐지자의 영상을 카메라에 잡아 차단 경비체제도 아울러 강화한다.

#### 나. 정보자료의 관리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를 자체생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입수한 때에는 먼저 이 정보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기존의 산업체재산권 제도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신지적 재산권 제도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가를 당해 정보의 특성과 영업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영업비밀로 선택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① 당해 정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산업의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에 있는 정보로 특허등록요건은 되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때 ② 특허등록은 받고 싶으나 당해 정보가 강도 계산의 운용방법이나 실패한 실험데이터, 시장 정보 등과 같이 특허등록요건이 되지 않은 때 ③ 당해 정보를 특허권과 같이 발명부분만을 권리로 받고 싶지 않고 그 발명을 포함한 관련 부분 일체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싶은 때 ④ 당해 정보를 특허권과 같이 일정기간(15년)만 독점베타권을 갖는것 보다는 코카콜라의 향내는 비법과 같이 영구 독점을 하고 싶은 때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선택 등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영업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를 판단한다.

세째,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네째, 당해 정보의 개발에 얼마만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비밀로 유지되었을 때의 가치가 공개되었을 때의 가치보다 큰가를 비교형량해 본다.

이상과 같은 차안에 따라 영업비밀로 선정한 정보는 일반정보와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업비밀은 그 중요도에 따라 I급 영업비밀, II급 영업비밀, III급 영업비밀, 사외비 영업비밀, 사내비 영업비밀 등으로 등급을 책정하고 그 활용가치에 따라 5년, 3년, 2년, 1년, 6월 등으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여기에서 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I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II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활동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외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되는 정보를, 사내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비밀 비인가자가 유리하게 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와같이 분류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영업비밀 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식을 하고 금고나 이중 자물쇠 등 특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영업비밀을 직무상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영업상 거래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열람, 복사,

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 기록부, 영업비밀 열람기록부 및 영업비밀 대출부 등을 배치하여 기록, 정리한다. 이와같은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적출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영업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관리실태의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한다.

#### 다. 장소 관리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보호를 요하는 연구시설, 생산시설 등이 있는 곳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구역을 피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때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각서 또는 서약서 등을 징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한지역이라 함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제한구역이라 함은 영업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통제구역이라 함은 영업비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 라. 정보관리체제의 구축

영업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가칭) 영업비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영업비밀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또한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취급자를 인가하여 관리한다.

#### 마. 기타 관리

이상의 영업비밀관리방법 외에도 고속처리 센터의 설치·운영,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적용,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직

무교육의 활성화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조치 등도 영업비밀관리의 간접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고속처리센터의 설치·운영

사원의 가정문제에서부터 개인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품고 있는 불만, 불평, 불안 등을 들어서 회사차원에서 해소방법을 모색하여 줌으로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확인케 하여 직장에 대한 긍지와 보람, 희망을 가지고 회사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하여 사내 윤리를 확립해 나간다. 그 방법의 예로서 충분한 보수, 공정한 인사, 공개경영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 기타 후생복지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2)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운용

사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 또는 창출한 영업비밀은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비밀신고제를 두어 운영한다. 신고된 영업비밀은 (가칭)영업비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비밀관리기록책에 올리고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의 엄격한 관리로 인하여 자칫 위축되기 쉬운 사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활발한 적용을 도모한다.

#### (3)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신입사원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영업비밀관리규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방법을 철저히 주지시킴은 물론 퇴직후에도 일정기간 지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을 갖도록 영업비밀보호의 생활화를 몸에 익히도록 한다.

#### (4) 영업비밀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조치방법

영업비밀의 누설, 영업비밀자료의 분실, 보호시설 및 장치의 파괴, 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비밀

관리책임자, 영업비밀관리 전담부서 및 영업비밀 관리위원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내조치는 물론 변호사나 영업비밀분야 전문가 등에 의한 법적구제나 조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소극적 관리

이상과 같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방법도 중요하지만 타사로부터도 영업비밀침해라는 이유로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소극적인 관리도 계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타자에서 근무했던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전직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나 각서 등을 징구하여 보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상품, 뉴비지니스 등에 관한 아이디어의 우편물은 반드시 개봉, 심사, 채택하기전에 제공자에게 우리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후에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취득을 제안받을 때에는 제안한 제3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그 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취득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상표와 브랜드

면수 : 255면

체제 : 국판

가격 : 8,000원

문의 : 551-5571